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도읍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926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0.

발 의 자 : 김도읍 · 안철수 · 이현승
이성권 · 백종현 · 박충권
추경호 · 구자근 · 박형수
서지영 · 김은혜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·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국립묘지 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그러나 산불진화 중 사망한 민간기업 소속 헬기 조종사는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상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하고 있으나,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에는 제외되어 있으며,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이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「특수임우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우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제외되어 있음.

이에 관공서 지휘 하에 산불진화 중 사망한 민간기업 소속 헬기 조종사 등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에 따른 공무수행사망자가 법에서 정

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,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이 필요한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특수임무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도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희생을 기리려는 것임(안 제5조).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1호카목 중 “공무원으로서”를 “공무원 및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제3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망자로서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마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로서 사망한 사람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)	제5조(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)
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 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 다. 다만, 유족이 국립묘지 안 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① ----- ----- ----- --. ----- ----- -----.
1. 국립서울현충원, 국립대전현 충원 및 국립연천현충원 가. ~ 차. (생 략)	1. ----- ----- 가. ~ 차. (현행과 같음)
카. 산불진화·교정업무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는 <u>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</u> <u>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</u> <u>는 직무 수행 중 사망하</u> <u>여 관계 기관의 장이 순</u> <u>직공무원으로 안장을 요</u> <u>청한 사람</u>	카. ----- ----- <u>공무원 및 「공무원 재해</u> <u>보상법」 제3조제1항제2</u> <u>호의 공무수행사망자로서</u> ----- ----- -----
타. ~ 하. (생 략)	타. ~ 하. (현행과 같음)
2.·3. (생 략)	2.·3. (현행과 같음)
4. 국립호국원 가. ~ 라. (생 략)	4. ----- 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마. <u>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</u> <u>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</u>

5. (생 략) ② ~ ⑦ (생 략)	<u>를」 제2조제2호에 따른</u> <u>특수임무유공자로서 사망</u> <u>한 사람</u> 5. (현행과 같음) ② ~ ⑦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